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2. 25.(화) 11:00
(지 면) 2025. 2. 25.(화) 석간

행정권한 민간위탁 내용의 대국민공개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
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 2월 25일(화) 국무회의 의결
- 재위탁 요건 명시, 위탁계약 내용 공개, 계약 위반 시 해제·해지 근거 마련

□ 행정안전부는 행정권한 민간위탁의 책임성·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(이하 ‘행정위임위탁규정’)」 개정안이 2월 25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「행정위임위탁규정」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,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고,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한해 재위탁하도록 했다.
- 또한,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의 공개*를 의무화하고,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.

* 위탁사무의 내용 및 근거, 수탁기관, 위탁기간 등을 누리집에 공개

□ 이창규 조직국장은 “앞으로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, 공정하게 민간 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조직국	책임자	과 장	서경원 (044-205-2361)
	사회조직과	담당자	사무관	구송현 (044-205-2374)

구분	현행	개선
재위탁 요건 명시	■ 위탁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다른 민간기관에 재위탁하는 사례 발생	■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 법령에 근거를 두고,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한해 재위탁 가능
위탁계약 내용 공개	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의 대외 공개 근거가 부재하여 실제 공개 비율이 낮음 ※ 계약내용 공개율: 31%(총 1,643건 중 513건, '23년도 기준)	■ 위탁계약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※ 위탁사무 내용·근거, 수탁기관, 위탁기간 등
계약 위반 시 해제·해지 가능	■ 수탁기관이 수탁기관 의무 등 위탁계약 위반 시,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을 제재할 수단 부재	■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위반 시, 위탁기관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가능